

하버드 대학교·대학원 한인 총학생회 회칙

2017.04.20 회칙 제정

2018.05.16 회칙 개정

전문

하버드 대학교·대학원 한인 총 학생회는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본교 한인 학생 및 연구원이 건전하고 보람된 교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호 유대관계를 형성,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 또한 촉진하며, 필요에 따라서는 대외적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학생단체이다.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 하버드 한인학생회는 최우선적으로 하버드 내 한인 학생 및 연구원의 정서적, 공동체적, 사회적, 문화적, 학문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.

제 2 조 (회원의 자격) 본회의 회원은 하버드 재학생 및 현직 연구원 중 본인을 한인으로 정의하여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고 연락망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. 졸업생에게는 준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.

제 3 조 (공식언어) 본회의 공식언어는 한국어, 공식문자는 한글로 한다.

제 4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1.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2.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다.
3.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
4.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.

제 2 장 총학생회장

제 5 조 (지위)

1. 총학생회장(이하 회장)은 본회를 대표한다.
2. 회장은 다른 단과대의 한인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.

제 6 조 (임기) 회장의 임기는 매년 6 월 1 일부터 다음 해 5 월 31 일까지로 한다.

제 7 조 (권한 및 책임) 회장은 다음의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.

1. 대내외적인 업무에 있어서 본회를 대표하며 회장단 회의 및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.
2. 부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 임원을 임명 및 해임할 수 있다.
3. 본회의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.
4. 임원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해야 한다.
5. 본회의 활동 및 회원에 관련된 각종 학교당국의 회의에 학생대표자로서 참석한다.
6. 기타 예산집행, 연락망 관리, 홈페이지 관리 및 총학생회 활동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.

제 3 장 회장단

제 8 조 (지위) 회장단은 본회의 운영 기구이다.

제 9 조 (업무 및 권한) 회장단은 본회의 운영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심의·의결권을 가진다.

제 10 조 (구성) 회장단은 회장, 부회장 및 임원으로 구성하고,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 회장은 부회장과 임원을 임명함에 있어 다양성과 대표성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 11 조 (부회장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
1. 부회장의 수는 1 인 이상, 3 인 이하로 제한한다.
2. 한인회의 재정은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 관리한다.
3. 회장 궐위 시에는,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. 부회장이 1 인 이상일 경우에는 부회장들의 합의에 따라 함께 공동 회장 대리를 하거나 그 중 1 인을 회장 대리로 선출한다.

제 12 조 (임기)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총학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 단, 부회장 및 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기 완료 전에 사퇴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안건상정제) 회원 5 명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은 회장단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의 후 회장을 통해 공식답변을 한다.

제 14 조 (탄핵) 회장, 부회장, 또는 임원의 탄핵은 제 4 장 총회의 절차를 따른다. 단, 탄핵 대상은 총회를 진행할 수 없다.

제 4 장 총회

제 15 조 (지위) 총회는 본회의 임시 의결 기구이다.

제 16 조 (업무 및 권한) 총회는 본회의 존립, 대내외 활동 및 본회와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한 심의, 의결권을 가진다.

제 17 조 (소집) 총회는 임원의 1/2, 회원 15 명 이상, 또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될 수 있다.

제 18 조 (공고)

1. 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7 일 안에 총회 실시를 공고한다.

2. 총회 실시여부와 안건은 늦어도 총회 7 일 이전에 공고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총회 2 일 이전에 실시여부와 안건을 공고 할 수 있다.

제 19 조 (의사 진행)

1. 총회의 의사 진행은 회장이 한다. 단, 회장이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.
2. 회장, 부회장이 진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시진행자를 선출한다.

제 20 조 (투표권)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 안건 의결을 위한 투표권을 가진다.

제 21 조 (의사, 의결 정족수)

1. 총회는 회원 15 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고, 온라인 투표자를 포함한 투표자는 30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.
2. 총회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장 총학생회장 선거

제 22 조 (선거) 본회의 선거는 보통, 평등, 직접, 비밀선거로 한다.

제 23 조 (선거권) 회원 모두 선거권을 가진다.

제 24 조 (피선거권) 회장 피선거권은 회원 중 선거가 있는 해의 봄학기에 재학 중이며 다음 학년 가을학기 및 봄학기 끝까지 재학하고 하버드 캠퍼스를 떠나지 않는 자로 한다. 현직 회장 또한 같은 조건 하에 피선거권을 가진다.

제 25 조 (선거 시기) 회장 선거는 봄학기 말 4 월 중으로 한다.

제 26 조 (의장) 현직 회장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. 단, 현직 회장이 후보자일 경우, 선거 관리는 부회장이 맡는다.

제 6 장 재정

제 27 조 (재원) 본회의 재정은 총학생회 운영금으로 집행한다.

제 28 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그 해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

제 29 조 (총학생회운영금) 총학생회운영금은 기업 및 개인 후원금, 학교 지원금, 기타 수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, 한인회의 운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 30 조 (예산) 예산은 임원회에서 심의, 의결한다.

제 31 조 (결산) 결산은 임원회에서 협의한 방식으로 회원에게 공개한다.

제 7 장 개정

제 32 조 (개정안의 상정)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된다.

1. 회장이 발의한 경우
2. 총학생회 임원의 1/2 이상이 발의한 경우
3. 회원 15 명 이상이 발의한 경우

제 33 조 (회칙 개정안의 공고)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회장은 회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신, 구 조문 대비표, 그리고 발의자 명단을 7 일 이상 회원 모두에게 공고한다.

제 34 조 (회칙 개정안의 의결)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한다.

1. 총회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

2. 3 일 이상 지속되는 온라인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
투표자 과반수의 찬성

제 35 조 (회칙의 공포) 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의결일로부터 2 일 이내에
총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

부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회칙은 2018 년 5 월 16 일 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회칙해석) 본회의 존립, 대내외 활동 등 본회와 회원 전체에 대한
중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칙해석에 불문명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
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 임원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
방법으로 해석한다.